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,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·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

신고예외 사항

-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
-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,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
-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 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
-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
- 송금수표, 우편환,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
-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
- 송금수표, 우편환,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
-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
- 거주자가 건당 1 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
-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
-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

외국환은행 확인 사항

-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
 - 。 해외체재자, 해외유학생, 여행업자,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 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
- 외국환은행 확인사항
 -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
 -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
 -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
 - 영화, 음반,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
 - 。 스포츠경기,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
 -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

- 수출·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, 방위산업체 근무자, 기술·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
- 。 외국에서의 치료비,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,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
- 。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

세관 신고사항

•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 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